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률 유효기간 5년 연장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42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률 유효기간 5년 연장(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1.

다.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도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법률 유효기간 5년 연장(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개정안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96 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31년</u>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96 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 <u>2036년</u> ----- -----.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함으로써,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되었음¹⁾.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²⁾ 종합계획³⁾ 및 연차별 실시계획⁴⁾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조성사업 과제별 재원투입 실적을 보면, 전체 투입계획 5조 2,912억원 대비 실제 투입액은 2조 8,288억원으로 약 53.4%에 그치고 있음.

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적 통합성 및 기능적 연계성을 지니는 광주광역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조성사업 과제별 재원투입 실적]

(2025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문화전당 건립·운영 (국가 직접/국비 100%)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과제 (광주광역시 보조사업/ 국비:지방비(5:5))			
		소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투입계획 (‘04.~’28.)	52,912	18,893	18,893	34,019	13,807	7,896	12,316
투입실적 (‘04.~’25.)	28,288 (53.4%)	18,368 (97.2%)	18,368 (97.2%)	9,920 (29.2%)	4,425 (32.0%)	2,998 (38.0%)	2,497 (20.3%)

※ (4대 역점과제)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④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서, 투입률이 97.2%에 달하는 반면,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등 광주광역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나머지 3개 과제의 경우 투입률이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은 기간 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미완성되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으로 이해됨.

참고로, 동 법률의 유효기간은 과거 문화전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문화전당 건립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5대 문화권 사업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반이 함께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음⁵⁾.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의하는 의견이며,

기획예산처는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 있고, 2021년에 이미 한 차례 연장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과 아울러, 제3차 수정계획에 따라 2031년 내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효기간 연장에 앞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54), 이병훈의원 등 18인 발의(2020. 8.13.), 본회의 의결(2021. 2.26.)

참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개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개요

- (추진배경)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공약('02년)
- (추진근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06.9 제정)
- (사업비전)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 문화로 아시아와 세계로'
- (사업기간/총사업비) '04년~'31년 / 약 5.3조원
 - * 종전 '26년(예산지원 '23년)까지였으나 아특법 개정('21.3월)되어 '31년(예산지원 '28년)까지 연장
- (추진체계) ^{문체부} 제3차 종합계획('22년~'28년) 및 ^{광주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추진
- (주요내용) 4대 역점과제 추진
 -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③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④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위상 강화

□ 예산 투입 현황 [3차 종합계획 上]

- (총사업비) 5.3조원(국비 3.3조원*, 지방비 0.8조원, 민자 1.2조원)
 - * (계획기간) 2004 ~2028년(25년간), (유효기간) 2031년까지
- (투입실적) 2.8조원(국비 2.3조원, 지방비 0.29조원, 민자 0.24조원)
 - (재원별 실적)

(2025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투입계획('04.~'28.)	52,912	32,700	7,896	12,316
투입실적('04.~'25.)	28,288 (53.4%)	22,793 (69.7%)	2,998 (38.0%)	2,497 (20.3%)

- (과제별 실적)

(2025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문화전당 건립·운영 (국가 직접/국비 100%)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과제 (광주시 보조사업/ 국비:지방비(5:5))			
		소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투입계획('04.~'28.)	52,912	18,893	18,893	34,019	13,807	7,896	12,316
투입실적('04.~'25.)	28,288 (53.4%)	18,368 (97.2%)	18,368 (97.2%)	9,920 (29.2%)	4,425 (32.0%)	2,998 (38.0%)	2,497 (20.3%)